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 계 · 주의 요구

제 목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시 ○○

징 계 대 상 자 ○○○○시 ○○ ○○○○과 지방○○○○○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내 용

지방○○○○○ ○○○은 2017.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과 업무에 대하여 총괄하는 총괄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 및 「전자정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제6절 및 제8절의 규정에 따르면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시 ○○(○○○○과)에서는 “○○○○시 ○○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주)○○○○○○)로부터 과업 참여 인력 중 고급기술자인 ○○○의 병가(2017. 6. 16.)를 사유로 인력 교체 요구(2017. 6. 18.)에 대하여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 기술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내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따라 교체 참여 수행자(○○○)의 경력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1990. 2. 25. ~ 2017. 6. 18.까지의 기간 경력을 12년 3개월(148개월)로 산정하여 고급기술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로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내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따라 교체 참여 수행자(○○○)의 기술자 등급 인정범위를 산정한 결과 2009. 7. 31.까지는 4년 4개월로서 초급기술자에 해당하며 이후에는 학력·경력자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고급기술자의 경력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급기술자)과 ○○○(초급기술자)는 동등하지 않아 자격이 미달됨에도 부적정하게 승인하였다.

또한 미완료 과업(‘WA인증 취득 및 웹 취약점 점검’¹⁾)에 대하여 내부보고

1) ①WA(web accessibility)인증 취득 :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의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및 계약변경 절차 없이 사업자와 사업담당자만의 협약을 통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 관서에서는 동 사업의 과업지시서 상의 “○○○○시 ○○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라는 내용을 인용하여 ‘○○○체육센터, ○○다목적구장, ○○다목적구장, ○○풋살구장, ○○풋살구장, ○○풋살구장, ○○풋살구장 등 시설공사가 진행 중인 7개 시설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에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과업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설공사가 완료된 이후 시스템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후 미완료 과업(‘WA인증 취득 및 웹 취약점 점검’)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한 채 계약변경 절차 없이 2017. 10. 5. 임의로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제출한 완료계에 대하여 사업담당자는 부당하게 과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하여 2017. 11. 11. 검수를 완료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위 관서에서는 동등한 자격이 아닌 변경 투입 인력에 대하여 인력 교체를 승인하여 주었으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과업이 모두 이행된 것으로 검수를 완료 하는 등 사업전반에 대해 부당하게 관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특히 지방○○○○○ ○○○은 “○○○○시 ○○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구축” 사업 총괄책임자로 투입 인력 교체 시 반드시 자격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② 웹취약점 점검 :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여 국제 웹 보안 표준기구 10대 웹 취약점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매뉴얼, 가이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취약점을 점검

동등한 자격으로 인력이 교체될 경우에 승인하여야 함에도 고급기술자(○○○)를 초급기술자(○○○)로 교체 승인 결재하였고, 사업자담당자가 부당하게 계약 변경 및 계약기간을 연장은 물론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검수하였음에도 총괄책임자로 최종 승인 결재하였다.

따라서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시 ○○청장은

[징계] 위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투입 인력 교체시 반드시 자격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동등한 자격으로 인력이 교체 될 수 있도록 하고, 과업의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연장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